



내년 7월 세계자연유산 재인증 “이상무”

도, 20억투입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사유지 매입 동굴 상부 농업활동 규제·방문객 관리 등 만전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세계자연유산 재인증을 앞두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권고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지난 2007년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 당시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상부 지점 사유지 매입과 동굴 상부 농업활동 규제, 방문객 관리와 학술조사 등을 제주자치도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 용암동굴계 사유지

(82필지·17만7444㎡) 추가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거문오름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분출된 용암류가 지형적인 경사면을 따라 약 14km 떨어진 해안까지 흘러가면서 형성된 용암동굴군을 말한다. 이중 거문오름을 비롯해 뽕밭굴, 우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만장굴, 김녕굴, 옥천동굴, 당처물동굴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또 2022년 7월 세계자연유산 재인

증 심사를 앞두고 오는 7월까지 유네스코 정기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예정이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통 모니터링 항목을 기본으로 6년마다 1회 각국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정기보고서를 제출받고 심사하고 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은 지난 2007년 등재된 후 2012년 1차 재평가를 받았으며, 2차 재평가는 대륙별 순환 심사 과정에서 2022년으로 순연됐다.

아울러 제주도는 이달말까지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한라산·성산일출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자연유산 해저 지질조사 및 가치발굴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제주도는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도내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올해는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자문기구 IUCN이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COMUNIDADES Caminho florestal da Madeira pode ter nome de ilha coreana



자신 3월 16일 포르투갈 마데이라 일간지에 실린 기사 전문.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포르투갈 마데이라 결연 재개 박차

15주년 기념 행사 개최 합의

제주도가 자매결연 이후 14년간 교류활동이 중단됐던 포르투갈 마데이라와 교류를 재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마데이라와 자매결연 15주년이 되는 2022년 결연 재개를 위한 활동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제주-마데이라 간 자매도시 결연은 2007년 1월 23일 마데이라 현지에서 있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주-마데이라 실무회의에서 자매결연 1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마데이라 일간지 디아리오 드노티시아스(Dnoticias)가 도와 마데이라 간 교류 재개에 대한 협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현지에 알려졌다고 제주도는 전했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제주의 교류 재개를 위한 노력에 마데이라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가 기대감으로 화답했다”며 “2022년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 및 교류 재개 축하 사업의 일환으로 빠르면 4월부터 양 지역 공식 SNS를 활용한 지역홍보 교류사업(랜선투어 등)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는 정은경 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 청장의 접종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접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주통계포털’ 운영 개시 파일·e-Book 등으로 제공

제주지역 다양한 통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주통계포털’이 구축돼 1일 문을 열었다.

그동안 도내 각종 통계가 도청 홈페이지의 하위 메뉴로 제공되다보니 이용자들이 세부 통계를 찾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제주통계포털은 이용자의 사용 빈도를 분석해 편의성·활용도를 고려해 구축됐다. 도내 주요 통계를 시각화를 통해 지역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호도가 높은 인구 통계는 별도로 구성했다.

또한 인구, 고용, 사업체 등 각종 지역통계를 파일, e-Book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초기 비용부담 완화하는 창업 지원 절실”

제주연구원 ‘식품가공산업 창업 활성화 연구’ 결과 “호텔·음식점 등 납품하는 중간수요 연계 추진 필요”

제주지역 식품가공산업의 창업률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생존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1일 발표한 ‘제주지역 식품가공산업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제주지역 식품가공산업 기업의 1년 생존율은 94.5%를 기록했으나 2년 생

존율 81.8%, 3년 생존율 75.0%, 4년 생존율 63.8%, 5년 생존율은 60.0%로 갈수록 기업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기준 제주지역 전체 창업기업 2만2091개 가운데 식품가공산업 창업기업은 55개(창업률 6.6%)에 그쳤다.

이와 관련, 고 연구위원은 제주지

역 식품가공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호텔, 음식점 등의 중간수요와 연계하고, 창업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창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제주지역 식품가공산업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관광, 광학 등의 민간수요 보다는 호텔, 음식점 등 기업의 중간수요와 연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식품가공산업 창업 기업의 제품을 호텔,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구조의 중간수

요 연계 창업 지원 모델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창업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 조성, 장비 구축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식산업센터 형태의 식품가공산업 시설 기준이 충족된 공간을 갖춘 제주식품산업 창업지원센터(가칭)조성을 제안했다.

고 연구위원은 “식품가공산업은 창업 초기, 식품 제조를 위한 시설 및 공간 조성이 필수적이고, 각종 인·허가 규제에 까다로운 산업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식품가공산업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 행정 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4·3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주4·3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은 열거할 수조차 없이 많은 규정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민주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 제2조 4·3사건 정의 규정은 제주4·3공산폭동과 내란을 일으킨 주체인 남로당을 명시하지 않았다. 소요사태, 무력충돌같은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여 봉기, 항쟁 등 민주화 운동으로 왜곡시키고, 정당한 진압행위를 국가폭력인 것처럼 왜곡하여 위헌이다.
- 제2조 희생자 정의 규정은 폭동과 반란에 가담했던 수형자를 희생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헌법질서에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희생자 심사기준을 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희생자는 무고하게 희생된 자이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 제14조 특별재심 규정은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을 용납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된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행한 판결을 부정하는 길을 열어 주고,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게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여 위헌이다.
- 제15조 명예회복 조치 규정은 위원회가 일괄 결정하면 ‘모든 수형인’에 대한 장관의 직권재심이 이루어지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주게 하겠다는 것이다. 적법절차를 가장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여 위헌이다.
- 제16조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규정은 내란에 가담했던 가해자인 수형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 제주4·3사건을 왜곡한 문재인 대통령과 4·3수형인들에 대한 형사보상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법무부장관 등을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 4·3수형인들의 재심재판에서 위법하게 무죄를 구형한 검사와 무죄를 선고한 제주지방법원 판사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 진정한 희생자에 대해서 애도하고 추념하기 위해서는 가짜 희생자를 철저히 가려내는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2021년 4월 2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 폭정종식비상시국연대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폭정종식비상시국연대/국민통합연대/4대강보해제저지국민연합/경기도사회/공정사회국민모임/국민노동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나라지킴이교교연합/대주자유공정시민회의/대한민국호예비역장성단/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미래대안행동/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인권여성연합/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수도이전반대법시민주쟁본부/신문명정책임연구원/원자력심리국민행동/의정감시단/자유민주국민연합/자유민주시민연대/자유민주시민연대/자유인민정치회의/자유언론국민연합/자유연대/제주4·3정립연구유족회/제주4·3역사왜곡반대학부모도민연대/제주도민연대/프리덤코리아/프리덤칼리지장학회/하늘교회/한미역사문화연구원/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행동하는자유시민

문의 02-737-0403 후원 국민은행 006037-04-006592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